

#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 3. 24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5. 3. 17 : 사천시장제출
- 나. 2005. 3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15호)
- 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 
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민원지적과장 하두용)

### 가. 제안이유

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명칭을 변경함
  -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⇒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
- 2)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함
  -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-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3) 위촉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: 1년 ⇒ 3년

### 다. 관계법령

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필상)

일부개정조례(안)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2005. 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므로 현행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상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(안)으로서

- “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” 명칭을 “『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』”로
  -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,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,
  -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
-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, 시행에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# 5. 토론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### 7. 소수 의견 : 없음